

득부분에만 취득세 및 등록세 의무에 해당되는지?)와 이에 따른 제세공과금(교육세, 농특세 등)의 납세의무여부와 관련법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의 의견]

종전 등기이전 경료된 사안인 본인 소유였던 부분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등록세 및 취득세의 재납부 의무가 없다고 사료됨.

회 신

귀문과 같이 본인 소유 부동산을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채권자의 경매에 참가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경매에 부쳐짐과 동시에 종전의 소유권 · 저당권 등의 권리 · 의무관계가 소멸되고 법원 등 경매주체로부터 불특정다수인과 동등한 자격으로 경매에 참가하여 새로이 취득하는 것이므로 취득세 및 등록세 납세의무가 있으며, 교육세는 교육세법 제3조 제5호 규정에 의하여 등록세액의 20%가, 농어촌특별세는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 제5호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액의 10%가 부과됨.

(세정 13407-901, 2000. 7. 12)

7. 영농조합법인이 주식회사로 전환되는 경우 취득세 면제 여부

【질의】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4항(등록세 면제) 및 제120조4항(취득세 면제)의 규정에 의하면 同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양수도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등록세를 면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9조2항의 규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양수도 방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1998년중에 설립되어 토지, 건물이 있는 영농조합법인이 2000년중에 신규로 설립된 주식회사(영농조합법인의 순자산가액 이상의 자본금으로 설립됨)에 토지, 건물을 포함한 자산과 부채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려 하는데 이러한 방법으로 영농조합법인이 주식회사로 전환되는 경우에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양수도 방법에 해당하여 관련 지방세인 취득세, 등록세를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4항 및 제120조 4항에 의하여 면제받